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에 대한 업종별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횟수(1차 위반, 2차 위반 및 3차 이상 위반으로 구분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다.

- 1) 1차 위반의 경우: 20%
- 2) 2차 위반의 경우: 50%
- 3) 3차 이상 위반의 경우: 100%

나. 가목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백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조항	업종별 과징금의 금액
---------	-------	-------------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 중개 업	해운 대리 점업	선박 대여 업	선박 관리업
		내항 정기 여객	내항 부정 기 여객	외항 정기 여객	외항 부정 기 여객	순항 여객	복합 해상 여객	내항 화물	외항 정기 화물	외항 부정 기 화물				
가.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호, 법 제32조제1항													
1)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00	1,000	1,000				
2)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500	500	500	500	500	500	250	500	500				
3)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100	100	100	100	100	100	50	100	100				
4)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고		25	25	25	25	25	25	10	25	25				
나.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법 제19조제1항 제2호,	3	3	5	5	5	5	3	10	5				

[illegible]

[illegible]

우 카. 법 제12조제4항에 따 른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 터 15일 이내에 인가사 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법 제19조제1항 제7호	2	1											
타. 법 제13조제1항에 따 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 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8호	3	2	5	5	5	5							
파. 법 제13조제3항을 위 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10	10	10	10		10					
하. 법 제1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5조	3	2	5	5	5	5			2	2	2	2	
거. 법 제16조제1항에 따 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 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3	2	5	5	5	5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하지 않은 경우 퍼. 법 제26조제1항을 위 반하여 국내 지사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5	3								
허. 법 제28조제1항을 위 반하여 운임을 공표 또 는 변경공표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									
고. 법 제28조제4항을 위 반하여 운항계획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노. 법 제29조제2항을 위 반하여 협약의 내용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	10								
도. 법 제29조제5항에 따 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0	10								
로. 법 제30조에 따른 사 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2	10	5								

모.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10					
보. 법 제31조제3항에 따 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5				
소. 법 제34조에 따른 영 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3
오. 법 제34조의2에 따른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3
조. 법 제50조제1항을 위 반하여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 제10호, 법 제32조제1항, 법 제35조	2	2	3	3	3	3	2	5	3	2	2	2	2